

# 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정책복지위원회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529호
----------	-------

2016. 12. 14.(수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윤은희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05일

○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윤은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하위규정 인용 항(項)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약칭 사용 위치 변경 (안 제1조))

- 제1조의 약칭을 제2조로 변경

나. 하위규정 인용 항 변경 (안 제6조)

- “충청북도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에 따름”  
⇒ “~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”

다.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(안 제4조, 제7조, 제9조)

-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변경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본 조례안은 하위규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권장 용어로 변경한 것임.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1조에서는,  
약칭 사용은 통상 목적조문(제1조)에서는 조례/규칙의 제명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, “충청북도”에 대한 약칭을 제2조로 옮기고,
  - 안 제6조에서는,  
상징물 사용에 있어 ‘충청북도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’에 따르도록 한 규정은 매뉴얼이 행정규칙 성격인 바,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는 하위 법령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“~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”로 수정한 것으로 타당함.
  - 안 제 4, 7, 9조에서는,  
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수정하였고,
  - 안 제12조에서는,  
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명기하였음.
- 본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##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” 를 “충청북도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도를” 을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를” 로, “휘 장” 을 “휘장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각각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때에는 충청북도 이미지형성 디자인 메뉴얼에 따라 사용하여 한다” 를 “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9조제4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행과 관련하여 기타” 를 “시행에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</u>를 상징하는 도기와 문장, 캐릭터, 동물, 식물 등을 규정하고,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상징물“이라 함은 <u>도를</u> 상징하는 도기, 문장, <u>휘 장</u>, 캐릭터, 동물, 식물 등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</u>를 -- <u>휘장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문장·휘장) ① (생 략)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,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3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·2. (생 략) 3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(생 략)</p>	<p>제4조(문장·휘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③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6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<u>충청북도 이미지형성 디자인 메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u></p>
<p>제7조(상징물 관련사업 등)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상징물 관련사업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사용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제9조(사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과 관련하여 기타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